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314

발의연월일: 2020. 7. 23.

발 의 자:한병도・박재호・이원택

이형석 • 김승원 • 김철민

박홍근 · 김성주 · 이해식

정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 인구유출로 인해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음. 2019년말 기준 수도권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선 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인구 분포의 불균형 현상은 점차 심화되고 있음. 지역에서 성장한 각계각층의 인재들이 외지로 이주하는 탓에 이들이 나고 자란 고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도 어려운 실정임.

고향을 떠나 외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애향심은 침체된지역에 활력을 불러올 수 있는 효과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음. 본 제도는 고향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향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임. 제도 참여자들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줄 수 있으며, 기부 행위를 통해 고향에 거주하는 이웃들의 형편과 미래 계획을 이해

할 수 있음. 이는 연대와 협력을 통해 우리 사회의 상생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는 오래 전부터 본 제도의 도입을 건의하여 왔음.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임.

한편, 일본에서도 2008년부터 고향에 기부할 경우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고향납세(故鄉納稅)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 제도는 재난 상황 발생 등과 같이 고향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큰 호응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음.

이에 고향기부의 모금·접수·활용 방안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 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 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음(안 제4조).

- 다.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자에게 물품 또는 경제 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음(안 제8조).
- 라.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의 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함(안 제9조).
- 마. 행정안전부장관은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분석, 연구 등을 통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안 제10조).
- 바.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과 고향사랑기금의 운용 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함(안 제11조).
- 사.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모금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 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5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고향사랑 기부금"(이하 "기부금"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말한다.
- 2. "기부금의 모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 정보통신망의 이용,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제공하여 줄 것 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부금의 모금·접수 및 사용 등에 대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모금 주체 및 대상)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 모금·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
- 1. 제5조를 위반하여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한 경우
- 2. 제6조를 위반한 방법으로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
-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제한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기부·모금강요의 금지)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기부금의 모금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매체, 정보통신망 (제10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포함한다), 안내책자·인쇄물의 배부, 그 밖의 적합한 방법으로 기부금의 모금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는 기부금의 모금을 할 수 없다.
 - 1. 개별적인 전화·서신·전자적 전송매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전자적 전송 매체를 말한다)의 이용
 - 2. 호별 방문
 - 3.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인 모임에 참석·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 권유·독려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의 모금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기부금의 접수) ①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 기관에 납부하게 하거나, 제10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결 제, 신용카드 또는 자금이체,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금의 접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답례품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 (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제1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
 - 1.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제조 된 물품
 - 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 3.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현금
- 2.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 3. 제2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제9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기부 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고향사랑기금은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되, 제3항에 따라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2.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전년도 기부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금의 일부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10조(제도의 연구 및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분석, 연구 등을 통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부금의 모금·접수 및 답례품 제공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업무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결과 공개의무)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의 접수 현황과 고향사 랑기금의 운용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 야 한다.
- 제12조(불법기부금의 반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고, 교부된 영수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부터 기부 금을 받은 경우
 - 2. 제4조제2항에 따라 모금주체에서 제외된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 을 접수한 경우

- 3. 제5조를 위반하여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한 경우
- 4. 제6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부금을 모 금한 경우
- 5.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
- 6. 제8조제1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답례품을 제공한 경우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반환하는 기부금은 답례품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제13조(지도·감독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부금의 모금, 고향사랑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거나 시정권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도·감독, 시정권고,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따라야 한다.
- 제14조(위반사실 공표) ①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 치단체가 제4조제2항에 따라 기부금 모금·접수를 제한받은 경우 해당 사실이 있음을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표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벌칙) 제5조를 위반하여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